



환경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1. 30.(월) 06:00 (월요일 석간)	배포 일시	2023. 1. 27.(금)
담당 부서	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	책임자	센터장 윤정기 (032-560-8383)
		담당자	연구사 김민섭 (032-560-8384)

환경 국가표준 86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

-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사회 진출 비용 절감 기대 -

-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(원장 김동진)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(KS) 86종의 국제표준(ISO) 일치화를 완료하고,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.
 - 환경분야 국가표준(KS)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.
 -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 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.
 -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.
 -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86종* 중에는 △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, △오염물질이 고등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방법 등 다양한 토양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.
- * △물환경 분야 28종 △토양 분야 8종 △대기환경 분야 5종 △대기배출원 분야 5종 △실내공기질 분야 6종 △지하수 분야 3종 △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3종

△생활소음 분야 4종 △유량 분야 6종 △제품환경성 분야 16종 △포장환경성 분야 1종 △교통환경 분야 1종

- 또한,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(하수처리시설, 수도시설, 슬러지 처리 시설 등)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139종*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에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.

* △교통환경 분야 12종 △대기배출원 분야 7종 △대기환경 분야 5종 △물환경 분야 58종 △생활소음 분야 6종 △실내공기질 분야 8종 △제품환경성 분야 3종 △토양 분야 22종 △방사능 분야 1종 △미생물 분야 4종 △폐기물관리 분야 1종 △유량 분야 3종 △포장환경성 분야 9종

- 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(e)나라-표준인증시스템(standard.go.kr)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.

-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“각 분야의 국가표준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, 관련 기업들이 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”라며,

- “올해는 표준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해에 제정된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는 등 표준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- 붙임 1. 환경표준심의회 구성·운영.
2. 질의응답.
3. 전문용어 설명. 끝.

- 산업표준화법 제4조 산업표준심의회 규정에 따라 환경분야 국가표준 (KS) 제·개정과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서 발간된 표준들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자 2개 기술심의회*와 16개 전문위원회**를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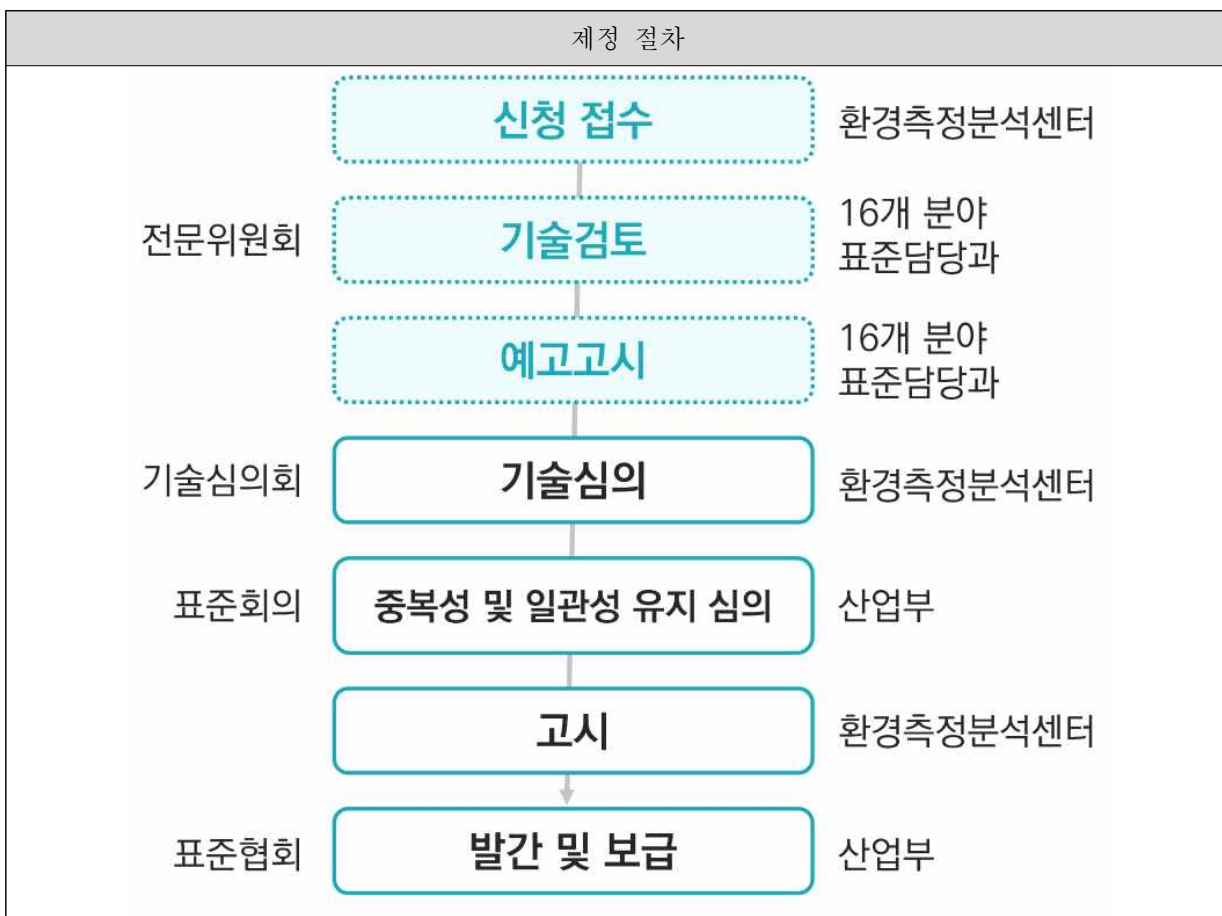
* 기술심의회는 일반환경 및 생활환경 2개의 기술심의회를 운영 중이며, 위원으로는 기술심의회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회장은 기술심의회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

** 전문위원회는 표준을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·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6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각 전문위원회는 표준담당관이 주재하며, 분야별 20명 이내의 산업, 학계, 연구기관 등의 소속된 전문가들로 구성

- 제정된 표준은 5년마다 검토하여 적부확인을 하고 분야별 16개 전문위원회 기술검토 → 기술심의회 적부심의 → 표준회의를 거쳐 고시
- 또한 표준 개정과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표준개발협력 기관을 지정하고, 국제표준 대응협력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을 지정하고 있음

1. 환경분야 국가표준(KS) 제정 절차가 궁금합니다.

- 개인, 기업 및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인이 표준안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관련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위원회, 기술심의회를 거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함으로써 환경분야 국가표준(KS)으로 확정된다.



- **환경분야 국가표준(KS, Korean Industrial Standards)**
 -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
 - 환경부장관은 「산업표준화법」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·위탁에 따라 환경분야 국가표준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
- **국제표준화기구(ISO,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)**
 - 환경·기술·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해 1946년에 설립한 국제기구
 - 현재 165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산하에 기술위원회(TC, Technical Committee), 분과위원회(SC, Sub-committee)를 두고 각 국가의 표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표준개발을 지원
- **고유 표준**
 - 국내 기술 기반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표준으로 효력범위는 국내에 한정
- **국제일치표준**
 -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번역하여 국내 산업표준으로 고시한 표준으로 효력범위는 국내외를 모두 포함